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19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3년 월 일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 제안이유

- 중평군설치에 관한 법률(법률 제06902호, 2003.5.29)에 의거 중평출장소가 중평군으로 신설됨에 따라 道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
- 중평출장소 명칭관련 조례의 자구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.

 주요골자

- 정원의 총수 : 2,529명 \Rightarrow 2,382명 (Δ 147명)
 - 집행기관의 정원 : 1,462명 \Rightarrow 1,315명 (Δ 147명)
 - 소방·대학·의회 의원 정원 : 변동없음
- 규칙으로 정하는 정원관리기관중 “출장소” 자구 정비
- 다른 조례의 개정 : 중평출장소 명칭관련 조례의 자구 등 정비
 - 충청북도 명예연구소 운영조례 등 9건

 의안전문 : 별첨

 신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 관계법령 발췌 : 별첨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호외의 부분중 “2,529명”을 “2,382명”으로 하고, 동조제1호중 “1,462명”을 “1,315명”으로 한다.

제3조중 “직속기관, 출장소, 사업소”를 “직속기관, 사업소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이 조례는 200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다만, 이 조례 시행 후 중평군지방공무원정원은 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제정·시행될 때까지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한 정원 범위 안에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①충청북도명예연구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1항 및 제9조중 “시장·군수·출장소장”을 각각 “시장·군수”로 한다.

②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및 제5조중 “시장, 군수, 중평출장소장”을 각각 “시장, 군수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중 “시장, 군수 및 중평출장소장”을 “시장, 군수”로 한다.

별표1 재목중 “시장·군수 및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”를 “시장·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”로 하고, 분야별 총무과관을 삭제하고, 분야별 안전관리과의 일련번호4 및 일련번호7중 “시장·군수·출장소장”을 각각 “시장·군수”로 한다.

③충청북도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중 “시장·군수(출장소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”를 “시장·군수”로 한다.

④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중 “시·군·출장소이하”시·군”이다 한다”를 “시·군”으로 한다.

⑤충청북도순환수립장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및 제9조제1항중 “시·군·출장소”를 “시·군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, 제9조제2항, 제10조제1항, 제10조제3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, 제14조제1항 내지 제14조제3항 및 제16조제1항중 “시장·군수·출장소장”을 각각 “시장·군수”로 한다.

⑥충청북도학교용자부담금부과·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, 제3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중 “시장·군수 및 출장소장”을 각각 “시장·군수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중 “시장·군수 또는 출장소장”을 “시장·군수”로 한다.

⑦충청북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중 “시장, 군수, 증평출장소장”을 “시장, 군수”로 한다.

⑧충청북도건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,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중 “시장, 군수, 출장소장”을 각각 “시장, 군수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및 별표 소요비용산정기준의 제2항 보관요금료중 “시, 군, 출장소”를 각각 “시·군”으로 한다.

⑨충청북도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중 “시·군·출장소”를 “시·군”으로 한다.

신 구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 (정원의 총수)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<u>2,529명</u>으로 하며,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1,462명</u></p> <p>2. 내지 4 (생략)</p> <p>제3조(정원관리기관별·직급별 정원의 규정) 본청, 의회사무처, <u>직속기관</u>, <u>출장소</u>, <u>사업소</u>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2조 (정원의 총수) <u>2,382명</u></p> <p>1. : <u>1,315명</u></p> <p>2. 내지 4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정원관리기관별·직급별 정원의 규정) <u>직속기관</u>, <u>사업소</u></p>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제103조 (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) ①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,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에 있어서 그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여야 한다.

③·⑤ (생략)

□ 증평균설치에관한법률 [제정 2003.5.29 법률 제06902호]

제1조 (목적) 이 법은 충청북도에 증평균을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충청북도 증평균 설치) ①충청북도에 증평균을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.

명 칭	관할구역
증평균	충청북도 괴산군 증평읍·도안면 일원

②충청북도 괴산군의 관할구역중에서 증평읍과 도안면을 제외한다.

부칙 <제6902호, 2003.5.29>
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충청북도 증평출장소(이하 "출장소"라 한다)의 기관 또는 시설에 소속된 직원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증평균(이하 "증평균"이라 한다) 소속의 직원이 된다.

②이 법 시행전에 출장소의 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증평균의 군수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로 본다.

③이 법 시행전에 출장소의 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·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증평균의 군수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·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.

제3조 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법 시행 당시 출장소의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그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해당 지역을 증평균의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본다.

제4조 (지방의회위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대한 특례) 증평균 설치로 인한 지방의회위원 및 증평균수의 선거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지방의회위원의 보궐선거등과 동시에 실시한다.